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시행 2024. 4.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115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7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10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제12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제13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제14조(법정대리인의 동의)

제15조(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제16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7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제18조(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제19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0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제21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제22조(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제23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제2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25조(분야별책임자의 지정)

제2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제27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등)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2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제4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32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3조(개인정보보호 교육)

제34조삭 제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6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제37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8조(접근권한의 관리)

제39조(비밀번호 관리)

제40조(접근통제)

제4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42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제43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44조(물리적 안전조치)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4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6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 • 연기 및 거절)

제47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제48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49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제50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6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51조(개인정보의 유출등)

제52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제53조(유출등의 통지방법)

제5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제55조(개인정보의 유출등 조사)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56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주체)

제57조(적용제외)

제5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59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제60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제6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제62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제6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제64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제65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및 점검)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제1절 총칙

제66조(적용범위)

제2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6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제68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69조(사전의견 수렴)

제70조(안내판의 설치)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70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제70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71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

제72조(보관 및 파기)

제73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제7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75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76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7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제6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7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79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제80조(재검토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시행 2024. 4.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115호, 2024. 4. 30.,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02-2100-248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4.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 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위 원회를 말한다.
- 7.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 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11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 (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 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거치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
- 12.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13.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13의2.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유영하는 자를 말한다.
- 14.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15.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16.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17.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 18.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접속한 자의 PC,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19.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 20.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 21.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 22.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 23.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말한다.
- 24.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 25.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 26.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 27. "친목단체"란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반상회 및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및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 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6.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⑦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 외 이용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 2.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 3.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 4.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제10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1항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 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 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 2. 알린 시기
- 3. 알린 방법
- ⑤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완전파괴(소각 · 파쇄 등)
 -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 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분야별책임자가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두 한 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2.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 5.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 ⑧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⑨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제10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나. 시행령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⑩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면 동의 시 제9항의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1.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제14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 제15조(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민감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16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유전정보,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18조(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 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 2.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적용한다.
 -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2018년 1월 1일까지 적용한다.
- 제20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21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제23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 제2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기획조정관이 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ㆍ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 8.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10.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 계의 구축
 -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 제25조(분야별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주요 개인정보를 보유·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분야별책임자는 해당부서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3.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6.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7. 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제2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 제27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등) ①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서 별도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단계)에 대한 보호관리
 - 2. 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제2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용 기간을 표시하고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 7.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3.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 14.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
 -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
 - 16.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 17.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 18.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제4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32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사항
 - 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ㆍ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 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 점검 및 이의 확인 감독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른다.
- 제33조(개인정보보호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육목적 및 대상
 - 2. 교육일정 및 방법, 교육내용
 -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전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 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제36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①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12.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3. 개인정보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별표 제2호의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 제37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무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 **제38조(접근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구성
-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 3. 비밀번호 변경은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 **제40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④ 삭제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삭제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번호
- 2. 여권번호
- 3. 운전면허번호
- 4. 외국인등록번호
- 5. 신용카드번호
- 6. 계좌번호
- 7. 생체인식정보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 1.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 2.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나.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⑥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삭제
- ⑧ 삭제
- 제42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 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3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2.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한 삭제 등 대응 조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4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제4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 제46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 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47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8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제49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 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제50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45조에 따른 열람, 제48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49조에 따른 처리 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 제51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제52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 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53조(유출등의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5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 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신고해야 한다.
- 제55조(개인정보의 유출등 조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유출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 2.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개인정보의 유출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56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7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라.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 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 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파일
 - 바.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사.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 2.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삭제
- 3. 삭제
-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 제5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 5.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7.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8.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9.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 11.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9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 ·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0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 제공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2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따라 산정해야 한다.
 - ②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제1호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 ③ 삭제
- 제6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61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 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 제64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65조(등록 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및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6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파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절 총칙

제66조(적용범위) 이 장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제6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8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9조(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0조(안내판의 설치)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설치 목적 및 장소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제70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②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영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운 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70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5.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 제71조(개인영상정보 이용 제3자 제공 제한 등)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제72조(보관 및 파기)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제73조(이용 제3자 제공 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제7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 제75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 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⑥ 삭제
- 제76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73조 및 제7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 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 제7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 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제79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현황
-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7.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현황
-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0조(재검토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8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8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5호,2024.4.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표 2] 삭제

[별지 1]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2] 위임장

[별지 3]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

[별지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5]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별지 6]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7] 개인정보파일대장

[별지 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 9]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지 10]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11]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별지 1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